

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(안)

제 1 조(목 적) 이 조례는 향토음식에 대한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지명도가 높고 맛이 좋은 향토음식의 기능 보유자를 지정하여 관리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정 의) ① 이 조례에서 향토음식이라 함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지역산물을 주 원료로 하여 조리한 음식을 말한다.
② 이 조례에서 기능 보유자라 함은 제 1항의 음식중 지명도가 높고 맛이 좋은 향토음식의 탁월한 조리 기능 보유자를 말한다.

제 3 조(설 치)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여 향토음식 기능 보유자의 지정·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지정위원회를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 둔다.

제 4 조(구 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충청북도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과 향토음식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제 5 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 6 조(기 능) 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도 향토음식 기능 보유자 지정 및 해제
2. 도 지정 향토음식 기능 보유자 발굴,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3. 기타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

제 7 조(의결 정족수) ①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 8 조(위원의 해촉)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 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임기중 사망 하였을때
2.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때
3. 기타 품위 손상등으로 위원으로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때

제 9 조(조사위원) ① 본 위원회에는 위원회 부의안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 조사위원은 관계분야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

③ 조사위원은 조사 사항을 입안하며 위원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.

제10조(지정 및 해제결정) 향토음식 기능 보유자는 도지사가 조사위원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지사가 지정하고 기능 보유자가 그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기타 특별한 해제 사유가 있을때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를 해제한다.

제11조(홍 보) 도지사·시장·군수는 지정된 기능보유자가 조리한 향토음식이 관광 상품화 되도록 적극 홍보 하여야 한다.

제12조(간사 등)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.
② 간사와 서기는 도지사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.
③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 및 사무를 관장하고,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.

제13조(수당과 여비) 도산하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조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